

규정류(제정·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 : 입학·홍보위원회규정
2. 규정류(제정·개정)사유: 내부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부서(입학처)에서 관리하는 규정 간 통일성을 위해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기함
3. 주요내용: 중임'과 '연임'을 혼용하여 '연임'으로 통일
4.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: 공포일로 부터
5. 참고사항
 - 가. 관련규정: 해당없음
 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 - 다. 관련부서: 해당없음
6. 첨부사항
 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(개정시) 1부.
 - 나. 규정류(제정·개정)안 전문 1부.

2026년 8월 10일

소관부서 : 입학처

(인) 2/13

관련부서 :

신·구조문대비표

규정명 : 입학·홍보위원회규정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1조(목적)~제2조(기능) <생략>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는 전임 교원중에서 입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4.4.18.) ② <삭제> (2024.4.18.) ③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</u>(개정 2024.4.18.) 제4조(회의)~제7조(운영세칙) <생략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	제1조(목적)~제2조(기능) <생략>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는 전임 교원중에서 입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4.4.18.) ② <삭제> (2024.4.18.) ③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(개정 2026.00.00.) 제4조(회의)~제7조(운영세칙) <생략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 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	공포일로부터 시행

입학·홍보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장안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 입학·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입학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교 대·내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(개정 2024.4.18.)
3. <삭제> (2024.4.18.)
4. <삭제> (2024.4.18.)
5. <삭제> (2024.4.18.)
6. <삭제> (2024.4.18.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는 전임교원중에서 입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4.4.18.)

② <삭제> (2024.4.18.)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(개정 2026.00.00.)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(개정 2024.4.18.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4.18.)

② <삭제> (2024.4.18.)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소관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